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할 일련의 핵심 업무영역들을 제안한다.

아래의 핵심 업무영역들은 예시목록이며 열거목록이 아니다. 즉, 위원회는 핵심업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긴급한 업무영역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며 아래 예시된 핵심 업무영역 하의 활동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각 핵심 업무영역별로 위원회가 수행하고자 하는 특별 활동들은 제6장에 서술되어 있다.

A.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사법행정

활동의 필요성

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법률, 정책,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특히,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영역에 집중할 것이다: 관련 입법안 검토, 사법집행 공무원의 책임/책무성, 관련 관행에 대한 점검. 이러한 주요영역의 업무를 위한 활동들은 제6장에 서술되어 있다.

활동의 가능성

성금요일 협정에 따라 현재 정부는, '국가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Offences Against the State Acts, 1939-1998)'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새로운 입법의 도입이 제안되어 왔고, 정부는 2002년 12월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정의법안 (Criminal Justice (Terrorist Offences) Bill)"을 발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안들의 추이를 긴밀히 모니터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안들의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충돌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때에 정부에 권고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묵비권 행사, 구금기간, 유전자 정보은행의 구축, 전자통신기록(휴대폰 또는 이메일 기록 등)의 압류 등에 관하여 새로운 형사정의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형법을 현대화하고 시대의 조류에 적응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발전시켜왔던 주요 안전장치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경고한다.

가르다 청원법안이 2003년 발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북아일랜드의 경찰 옴부즈맨 제도와 유사한 가르다 옴부즈맨 제도의 설립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본 입법안이 가르다 시오차나(역주: 아일랜드 경찰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내용과 추이를 긴밀히 모니터할 것이다. 1947년의 교도소 규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도소 규칙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교도소 규칙은 지난 2002년 아일랜드의 교도소와 구금시설을 방문한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출시와 때를 맞추어 공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도소 내 환경과 관련규칙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교도관에

대한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진정을 다루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설치를 촉구할 것이다.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구금관련 조건들과 범죄혐의가 없는 정서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시설규정에 대해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관련 상황이 국제인권기준 및 모범사례들에 부합되도록 모니터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이 아일랜드 국내법에 최대한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지지한다.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은 아일랜드의 법원과 형사정의, 형사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수용과정과 그 효과를 모니터할 것이며, 유럽인권협약의 수용이 아일랜드 사회의 더욱 강력한 인권보호로 귀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B.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활동의 필요성

아일랜드는, 남녀평등, 노동권,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 등 일련의 포괄적인 실체적 권리들을 보장해야할 국제적 ·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여러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일련의 우려사항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핵심은 정부의 국가빈곤퇴치전략에 인권의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이 서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활동의 가능성

빈곤퇴치청(Combat Poverty Agency)과 여타의 국가기관들은 아일랜드 내 다양한 집단들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하기를 바라며, 사회권의 보장을 지원하기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가능한 활동들을 찾고자 한다. 특히, 위원회는 사회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사회권이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의 시행을 위한 법적 수단들이 국제법에서 요구되고 있는지, 아일랜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빈곤퇴치와 평등의 문제에 관하여 그 정책과 관행에 있어 다양한 시행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발전상황과 추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히 의사결정자들과 법원들에 널리 알려낼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유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관련 집단과 정부당국,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여타 업무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들을 강조하고 사회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진작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원회는 사회권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주제별·지역별 그룹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이다.

그동안 '인권'과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위원회는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정부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인권의 규범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인권보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발전지표(indicators of progress)를 개발하고 정의하는 데 참여할 것이다. 발전지표는 관련 그룹들과 연계하여 우선 일부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에 관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하는 것은 지역별·주제별 그룹이나 공무원들을 통해 시범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C. 크로스커팅 이슈들

인종주의

활동의 필요성

인종주의는 현대 아일랜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인종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집시 등 유목민에 대한 인종차별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때때로 유대인이나 아일랜드 사회의 소수 흑인에 대한 공격도 있어왔다. 다른 국가들처럼 인종주의가 매우 만연해있다거나 폭력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아일랜드에서도 현재 인종주의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의 신호들이 있다. 아일랜드에 유입되는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난민, 난민신청인,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일랜드 시민, 이주노동자 등은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를 경험해 왔다.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등청(Equality Authority), 인종주의와 문화상호주의에 관한 국가협의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Racism and Interculturalism)와, 인종주의 바로 알기 운동(Know Racism Campaign)을 포함한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많은 훌륭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부처, 경찰청의 인종 및 문화상호 담당 부서, 그리고 여타의 공공기관들도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전에 직면하기 위하여 여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활동의 가능성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차별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정부의 '인

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Against Racism)'에 관한 조정그룹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위원회는 유목민 단체들을 비롯하여, 주택법(Housing Act, 2002) 상의 사유지 침범금지 관련 규정들에 반대하고 '유목민 사회에 관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on The Travelling Community)'의 권고사항들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의 중요한 활동들이 2003년도에 예정되어 있다: 1) 정부는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며, 2)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최초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3) 한편, 인종적 증오 선동금지 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이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이미 의견서를 제출,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인, 난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일랜드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인들이 그들이 비호를 신청한 원인이 되었던 정신적 고뇌와 폭력적 상황들로 인하여 또는 난민신청과정동안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의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 및 이민관련 법률과 관행이 최고 수준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유럽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활동의 필요성

아일랜드에는 최소 삼십 육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은 보통 "아일랜드의 잊혀진(forgotten) 시민"으로 묘사된다. 장애인들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중심적(rights-based)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일랜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이다.

활동의 가능성

유엔 차원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6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들은 장애인들이 가지는 인권문제들에 관해 이미 익숙해져 있다. 또한 유엔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기구의 차기 회기 이전에 공동입장 보고서를 채택하고 차기 회기에서의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등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각 국가인권기구의 노력을 조화시키기 위한 유럽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에 동의를 표해왔다.

한편, 유럽연합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13조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암스테르담 조약 제13조에 따라, 고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이 제정되었으며, 아일랜드는 국내법을 통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장의 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아일랜드 현행법보다 강력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장애인지위위원회(1996)의 보고서에 포함된 일련의 개혁 청사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아일랜드의 관련 개혁과정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법 역시 변화를 위한 '사법적' 의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는 아일랜드 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지위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장애인법안 협의그룹(Disability Legislation Consultation Group)'에 의해 장애인법의 도입을 위한 일련의 논의가 2002년 시작되었다. 협의그룹은 "장애인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법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장애인 이슈에 대하여 인권중심적 관점을 추구하는 국제적 추세를 국내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신장애

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폐쇄형/개방형 수용기관의 피수용인에 대한 보호, 건강권, 동의에 따른 수용에 대한 권리, 특정형태의 치료에 찬성 또는 반대할 권리 등 정신건강에 관한 특정 인권이슈들을 위원회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듯이, 위원회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을 일반장애의 이슈들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장애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등권 의제에 정신장애인들이 더욱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정신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아일랜드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평등

활동의 필요성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평등권을 증진하기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불충분한 여성 대표성, 빈곤여성의 증가,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등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아일랜드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인권적 관점을 확보해나가기 위하여 여러 국가기관과 여성단체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나 인종적 소수자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활동의 가능성

위원회는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인종주의와 관련한 성평등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여성 난민 · 난민신청인 ·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있어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원회는 인종주의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에 있어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중의 차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에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개정한 '국가빈곤퇴치전략'은 빈곤에 대한 취약집단 중의 하나로 여성을 포함시켜왔다. 위원회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특히 국가빈곤퇴치전략의 시행과 그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북경행동강령의 이행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국가계획'을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이행보고서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여타의 국제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에 대해 위원회의 (대안)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성평등적 관점을 추구할 계획이다.

평등과 다양성

활동의 필요성

최근 평등권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고용 및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어 수많은 사회집단들이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고용평등법(1998)과 평등지위법(2000)은 다음의 아홉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 가족의 지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종교, 유목집단의 구성원. 평등청(Equality Authority)은 여타의 국가기관들과 함께 위 두 법안에 규정된 평등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으며 요보호 사회집단의 인권을 보다 광범위한 평등권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집단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집단들이 남아있다.

활동의 가능성

위원회는 평등청을 비롯하여 평등청의 업무 이행을 지원하는 여타 국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특히,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장벽에 직면하여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호의 업무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등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권 및 평등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환영하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추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평등과 인권을 위한 공동포럼(Joint Equality and Human Rights Forum)'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이행하고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아일랜드 사회의 여러 사회집단들 간의 차이와 개인의 다양한 요구들을 인정할 것이다.

아동

아일랜드는 최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위원회는 정부가 협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모니터할 것이며, 적절한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임명되는 경우 그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숙, 마약중독, 다른 아동들로부터의 따돌림, 성매매 등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예비토의를 가진 바 있다. 위원회는 직접적인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차등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노인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 양로원들이,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신체적, 정신적 일체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건강청(Health Boards) 등 관련기관들의 반응을 평가할 것이다.

제6장 기능 및 활동

본 장은 위원회의 법적 기능과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들을 서술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인권위원회법(2000)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8조의 내용은 각 소제목에 설명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들을 인권위원회법 제8조에 규정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 기능들은 상호 중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제8조 (f)항)와 연구(제8조 (e)항)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각 기능별로 활동목록을 서술하였다. 활동목록은 일반 활동과 제5장에서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의 수행을 위한 특별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의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다. 만약 위원회가 그 권한과 기능에 있어 중요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검토의 일환으로 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권고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제한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다.

법률과 관행에 대한 지속적 검토

인권위원회법(2000) 제8조 (a)항 :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관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2000)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현실에서 시행되는 방식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만약 관련 법률과 관행이 적정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정부와 국가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것이다.

위원회가 인권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과 관행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이나 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영역들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국가의 법률 및 관행의 특정 양상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특정 양상'은 제5장에서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들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형법, 난민 및 이민법, 평등법 등 핵심 업무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각 취약집단의 인권보호 상황을 모니터한다.
- 아일랜드에 대한 국제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들의 활동에 관여한다. 특히, 국가의 법률과 관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에 관하여 조약이행감시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이행보고서 작성과 이행보고서에 대한 조약이행감시기구의 심의회의를 주시한다.
- 국회(Oireachtas)와의 효율적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국회의 관련 위원회나 필요한 경우 각 정당에 의견을 제출한다.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을 주창한다.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들의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 현행 인권보호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입법의 도입을 촉구한다.
- 인권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 성별, 나이, 유목집단의 구성원, 인종적 소수자, 언어적 소수자, 성적 지향,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관행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핵심 업무영역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유럽고문방지협약,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한다.
- '사회통합 협의그룹과 포럼(Social Inclusion Consultative Group and Forum)'에 참여하고 빈곤지수(poverty indicators)의 활용을 주장함으로써, 국가빈곤퇴치전략에 인권의 관점이 완전히 통합되도록 촉구한다.
- 사법행정 상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활용한다.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Offences Against the State Acts, 1939-1998)'의 도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비상계엄의 조속한 종결, 모든 중범죄에 대한 배심재판 회부를 포함한 안전장치들의 정상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한다.
- '인종적 증오 선동금지법(1989)'의 검토에 기여한다.
- 난민신청인과 난민에 관한 법률과 관행을 검토한다.
- 이민법 및 관련 정책의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 평등지위법과 고용평등법을 검토하고, 법률상의 차별근거를 정치적 의견·형사전과·사회경제적 지위·노조가입 등에도 확대해야한다는 평등청의 제안을 지지한다.
- 경찰 및 교도관에 대한 진정사건을 다루는 독립적인 진정 메커니즘의 도입을 촉구한다.
-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아일랜드 방문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권고사항의 이행을 모니터한다.
- 교도소 및 청소년수용시설의 구금에 관하여 국제인권기준이 준수되도록 특히 다음의 활동을 한다.
  - 기존의 '교도소 규칙(1947)'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도소 규칙의 도입을 촉구한다.
  - 수형자와 교도직원, 특히 지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수형자의 적절한 의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정서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절한 시설제공을 촉구한다.
  - 장기수에 대한 석방절차를 검토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법안의 초안 작업에 기여한다.

정부부처 요청 시 입법안 검토

인권위원회법 제8조 (b)항 : "정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법안을 검토하여 해당 입법

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위원회는, 각 정부부처가 위원회로 하여금 입법안을 검토하여 해당 입법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해줄 것은 요청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당 입법안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어떠한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원회는 헌법적,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바탕으로 입법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두 건의 법안검토요청을 받았다. 하나는 형법 중 정신착란 관련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2002)이고, 다른 하나는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정의법안(2002)이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제8조 (d)항 참조).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인권보장과 관련된 입법안 도입과정에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와 효율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 입법안이 주의해야할 인권적 내용들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안의 초안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나간다.
-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응을 평가한다.
- 입법안 검토 시,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들과 적절히 협의한다.

국내외 기관/기구와의 협의

인권위원회법 제8조 (c)항 : "인권의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기관 및 기구들과 협의한다."

국내적 차원에서, 위원회는 인권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타의 기구들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관련 기구 및 단체, 국제기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럽이사회의 인권관련 기관들, 유럽 및 유엔의 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와 비슷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내의 여타 법정기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국내외의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며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 아일랜드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들과 대화하고 특히 정부의 조약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제인권기구들의 인권기준 설정과 발전에 기여한다.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 유럽지역그룹'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 아동 옴부즈맨이 임명되기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발전을 모니터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를 지지한다.
-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들과 협력한다.
- 국내적/국제적 인권보호기준 발전에 중요한 국제회의와 행사에 참여한다.
- 국제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추이를 업데이트 한다.
- 국제인권조약 이행감시기구의 공식방문, 국제기구 또는 타국가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단의 아일랜드 방문을 도모한다.
- 요청이 있는 경우, 스코틀랜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에 기여한다.
-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국가인권기구의 회의 참여자격 보장을 주창한다.

핵심 업무영역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유럽인권재판소의 개혁에 관한 '국가인권기구 유럽지역그룹'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수형자의 인권보호, 교도소 내 환경,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하여 교도소 감독관(Prison Inspector)과 미팅을 가진다.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상기 위원회들의 권고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행보고서 심의과정에 기여한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기여한다.
- '장애인법안 협의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법안 협의과정에 기여한다.

정부에 대한 권고

인권위원회법 제8조 (d)항 : "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권의 강화와 보호, 지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이나 청원에 대해,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나 공식 정보채널을 통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 위원회의 직권으로 정부에 권

고할 것이다. 권고사항에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새로운 입법도입, 기존 법률의 폐지, 기존 정책이나 관행, 절차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각 정부부처가 인권의 강화와 보호를 위한 관련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해 줄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부처의 요청에 대해 신속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비중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각 정부부처와 건설적인 업무관계를 발전시킨다.
- 제5장에서 설명된 위원회의 핵심 업무영역과 추후 제기되는 여타의 인권이슈들에 관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권고를 준비한다.
-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 필요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연구 및 교육활동

인권위원회법 제8조 (e)항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증진은 인권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위원회의 목적에 있어 핵심적 사안이다. 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능한 한 널리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 훈련, 연구, 정보제공, 자료배포 등이 포함될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그룹이나 기구들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대표들 그리고 여타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인권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인권보호,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취약집단의 권리 등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의 보호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한다.
- 주제별, 전문적, 법적 또는 자발적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존의 인권교육 자료와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조사한다.
- 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영역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교육과학부(교과과정개발부서), 경찰청의 인권그룹, 비정부기구, 대학, 교육대학, 지역교육단체 등 여타의 교육관련 기구들과 널리 협의한다.
- 아일랜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 주제별, 국내적, 국제적 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각 정부부처별 인권담당관의 임명을 독려하고, 인권담당관, 비정부기구 및 여타 기구들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한다.
- 국내적/국제적 인권기준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배포한다.
- 회의, 세미나, 캠페인, 기타 대중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인권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한다.
- 여타의 기관이나 기구들이 조직하는 인권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 위원회의 핵심 업무영역,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등을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 공공방송, 인터넷, 연례보고서를 포함한 인쇄물 등을 통해 일반대중 및 해당 이해집단과 소통한다.
- 지역 그룹들에게 인권업무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기구들 간의 의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기구들과 인권포럼(Human Rights Forum)의 설립을 논의한다.
- 어떠한 경우/환경에서도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도모한다.

핵심 업무영역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내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아일랜드의 사회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권의 실질적 보호를 가속화하기 위한 시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권고사항들을 제시한다.
- 경찰청으로 하여금 신입직원 또는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훈련과정에 인권훈련을 통합시키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들을 수행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지부와 함께 일련의 인종주의 관련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조사

인권위원회법 제8조 (f)항 : "제9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해당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조사는 위원회의 기능—인권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하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기구들과 협의하는 기능—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미미하거나 남용적인, 명백히 근거 없는, 이미 법원의 결정의 내려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다루는 편이 나은 사건의 경우 조사수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해당사안을 법원에 가져가는 동안 진정사건의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

조사수행이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증인의 출석과 관련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사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인권위원회법(2000)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록 2 참조)

조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리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성격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며, 결정을 번복하거나 진정인 개인에 대한 구제조치 또는 피해보상을 제공할 권한은 없다. 위원회는 단지 인권의 강화와 보호 및 지지를 위한 조치들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장의 도입부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중첩되어 수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인식증진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위원회는 각 기능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상호 강화되는 방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법 제8조 (j)항에 따라 법률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기능수행 상의 한계들은 본 장의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진정서 양식을 제공한다.
- 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진정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한다.
- 조사수행에 관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개발한다—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 인권보호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슈, 긴급한 또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이슈, 위원회의 여타 업무영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5장에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들의 선정기준과 부합하여 개발될 수 있

다. 그러나 핵심업무 선정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보전해야 한다.

- 위원회의 조사수행에 관한 기준들을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위원회의 여타 업무영역을 지원, 지지하기 위하여 조사기능을 활용한다.
- 조사수행이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사수행의 효과를 모니터하고,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로 법률이나 관행상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보고한다.
- 접수된 진정사건들 중 인권위원회법(2000)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법률 및 기타지원이 필요한 사건은 어떤 것들인지를 평가한다.

연구결과 출판

인권위원회법 제8조 (g)항 : "필요한 경우, 제8조 (e)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결과나 제8조 (f)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보고서를 출판한다."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핵심적 인권사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위하여, 위원회는 자체연구를 수행하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타 기구 또는 그룹들과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또는 의뢰하는 연구과제들은, 한계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인권문제의 영역들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원회는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연구는 헌법적·국제적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수행될 것이다. 위원회는 비슷한 인권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타국의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의 명부를 작성, 발전시킨다.
- 다음의 연구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 9.11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유럽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안들을 비롯한 비상계엄권한 사용문제
  - 사유지 침범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목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난민 및 이민 관련 법률과 관행
- 수용시설의 노인들에 대한 위원회의 연구를 발전시킨다.

핵심 업무영역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장애인 중 특정 취약집단의 실태에 관하여 주제별 연구수행을 고려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의무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연구는 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의 확인을 목표로 한다.

법원에 대한 제3자 진술

인권위원회법 제8조 (h)항 : "법정에 자유로이 출석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인권관련 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법정의 친구'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각 법원은 위원회의 출석을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관련 사건에서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friend of the court)'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신청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빈번한 일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절차이다. 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법정의 친구'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는다. 위원회는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유용한 발전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법정의 친구'라는 개념은 해당사건에 관한 법률적 원칙이나 그 심사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의 친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은, 해당 사건의 심사에 있어 법원이 숙고해야할 헌법 및 국제조약 상의 인권기준과 원칙들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정의 친구'는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에 관하여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제5장에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는 경우, 해당법원에 '법정의 친구' 자격을 신청한다.
- 아일랜드 법원으로 하여금 국제인권기준을 숙고·참작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을 활용한다.
- 취약집단이나 배제집단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참여

인권위원회법 제8조 (i)항 : "다자회담을 통해 체결된 협정의 제6절 [권리, 안전조치, 기회의 평등] 제10조에 언급된 합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한다."

1998년 성금요일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합동위원회는 2001년 11월에 설립되었고,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진다.

합동위원회는 두 인권위원회가 이주와 인종문제 등 초국경적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합동위원회는 또한 아일랜드 섬 전체에 공동의 인권기준을 이행하고 시행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시킨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는 성금요일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일랜드 섬 전체의 동등한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 성금요일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섬 전체의 권리헌장(Charter for Rights)을 개발하고 그 협의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통해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 협력한다.
- 아일랜드 정부와 영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 유럽과 유엔의 인권조약과 그 이행감시기구에 대한 두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조화시킨다.

핵심 업무영역을 위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합동위원회의 '인종주의에 관한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아일랜드 정부와 영국 정부가 도입하게 될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한다.
- 비상계엄의 폐지를 강조하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사법 정상화를 촉진시킨다.

법률 및 기타 지원

인권위원회법 제8조 (j)항 : "인권위원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나 관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소송 중에 인권보호를 원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사적·형사적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안이 원칙의 문제인 경우, 위원회의 지원 없이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의 법률지원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위원회법(2000)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소송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연구수행이나 기타 실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록 2 참조)

위원회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만한 자원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 사건이나 매우 긴급한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사건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이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가 접수한 법률적 조언/대리 요청을 신속히 처리한다.
- 법률적 지원/대리 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제5장에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들에 부합하도록 법률적 지원/대리를 제공한다.
- 소송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또는 기타 실용적 지원을 제공한다.
- 아일랜드의 법률과 관행에서 파생된 이슈들에 대해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집단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소송 제기

인권위원회법 제8조 (k)항 : "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위원회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헌법 또는 국제조약, 국내법을 통해 시행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의 규정들에 의해 보장된 인권의 문제일 경우에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조약이 국내에서 시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용이 아일랜드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편입되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아일랜드는 국제인권조약이나 협약의 대부분을 국내법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있다.

일반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들을 계획 한다:

- 위원회는 제5장에서 설명된 핵심 업무영역들에 부합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함에 있어 전략적 접근방식을 개발한다.
- 국회 행위의 합헌여부에 관해 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접수한 진정이나 요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소송제기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의 국내법적 수용을 촉구한다.
-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 아일랜드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친 영향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제7장 업무의 조직, 기타 관련사안

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지며 특정 이슈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특별회의를 갖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하여 여러 하부위원회와 자문그룹을 설치하였다. 현재 15개의 하부위원회 및 자문그룹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1939-1998)"에 관한 특별위원회
특별 인사위원회
장애아동에 관한 자문그룹
수용시설의 노인에 관한 자문그룹
업무전략위원회
인종주의위원회
절차규칙위원회
사무총장(Chief Executive Officer)임명위원회
웹사이트, 로고, 컴퓨터 네트워크 위원회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의견작성 위원회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위원회
진정사건처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연구위원회

각 하부위원회들의 성격과 범주는 위원회가 여전히 시작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는 하부위원회의 숫자와 기능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직원이 더 채용된 이후, 하부위원회와 자문그룹의 체계는 직원의 수행업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하부위원회 체계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위원회 자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직원들이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위원회는 하부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결정한다. 하부위원회는 주로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표결권한이 없는 외부위원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 장애아동에 관한 자문그룹과 수용시설의 노인에 관한 자문그룹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외부전문가 위촉 관행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

다. 사무총장(Chief Executive) 역시 여러 하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러한 관행 역시 계속될 것이다.

하부위원회는 위원회의 하위기구이며, 각 하부위원회에는 하부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의장이 있다.

위원회는 성금요일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인권위원회와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 참여한다. 합동위원회는 일 년에 약 6차례 회의를 가지며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인종주의에 관한 소위원회, 아일랜드 섬 전체의 권리헌장 개발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회는 합동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 업무계획 기간 동에도 합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직원

위원회는 최근 사무총장을 임명하였으며, 위원회의 법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채용될 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진정처리 담당관 (Senior caseworker)
입법정책심사 담당관 (Senior Legislation and Policy Review Officer)
인권홍보 담당관 (Senior Human Rights Awareness Officer)
진정처리 부담당관 (Assistant caseworker)
입법정책심사 부담당관 (Assistant Legislation ad Policy Review Officer)
일반 행정관 (General Administrator)
재정인사 행정관 (Administrator, Finance and Human Resources)
사무관 (Desk Officer)
사무원 (Clerical Officers) 2인

추가 직원채용 이후 위원회의 조직도는 부록 3의 도표와 같다.

훈련

본 업무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권훈련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이다. 헌법 및 아일랜드가 가입한 협정, 조약, 협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이므로, 위원회 위원과 직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에 특별한 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위원회 자체의 조직과 업무에 있어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재정

인권위원회법은 재정경제부의 동의하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결

정하여 매년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위원회에 지급된 예산은 백이십구만 이천(1,292,000) 유로였다.

2003년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기획하여 차기 예산지급액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부록 1] 위원회 업무연혁 (2001년 9월~2002년 12월) / 생략
[부록 2] 인권위원회법(2000) 제9조, 제10조 / 생략

[부록 3] 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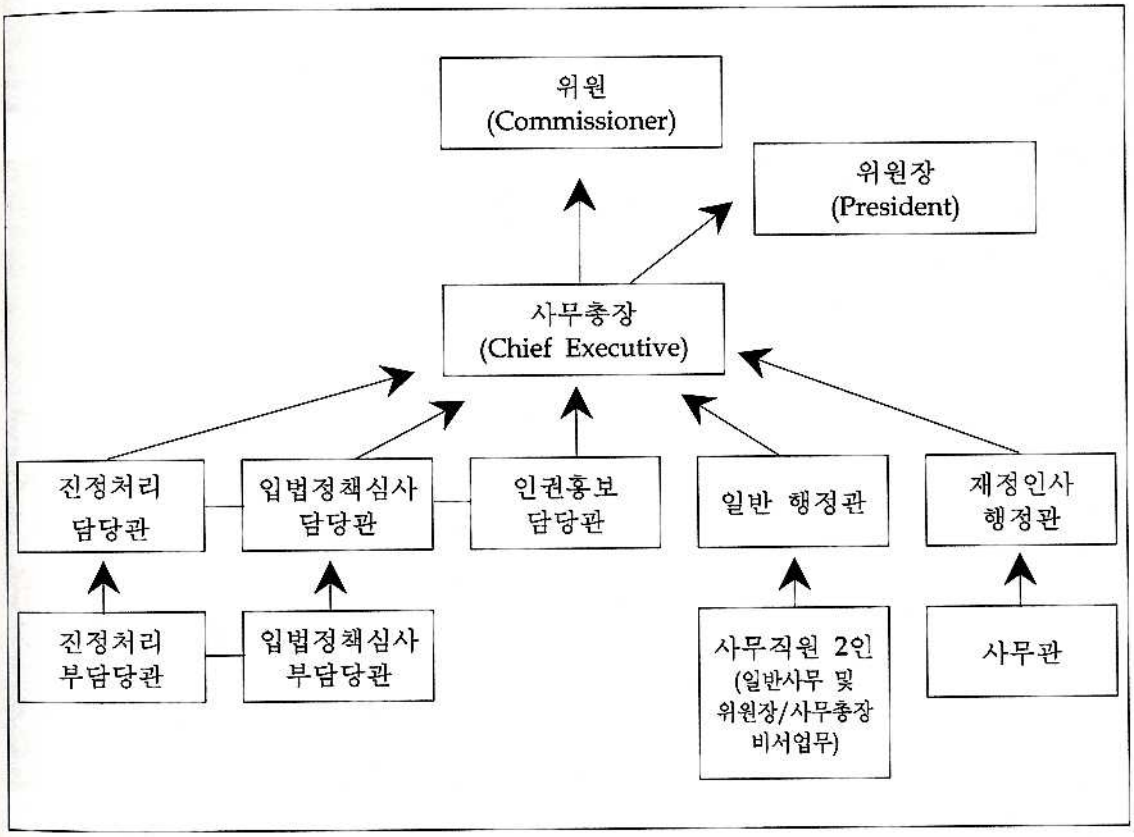

인권정책

Goal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1.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협의·개선 및 권고 강화
2.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시
3. 인권침해·차별행위의 판단기준 및 구제지침 개발
4.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점검 및 개선권고
5. 버림받은 아이,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특별기획사업)

세부사업

1-1. 인권관련법령 제·개정시 협의의 실효성 확보
1-2. 인권관련 기존 법령·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2-1.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2-2. 다수인보호시설(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2-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3-1. 각종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작성
3-2. 주요 차별유형 구체화 및 구제지침 개발

4-1. 주요 인권조약에 대한 UN최종 평가서에 따른 국내법 제도 점검
4-2.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방안 수립 촉구
4-3.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5-1. 실태조사 실시
5-2. 인권보호개선방안 개발 및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추진전략

1. 신속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업무수행 역량 강화
2. 기획조사 등을 통한 인권침해 구제의 효과성 제고
3. 진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은행 기반구축

세부사업

1-1. 진정처리 시스템 구축
1-2. 현장중심의 진정접수 및 조사체계 확립

2-1. 대규모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2-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고발사안 등의 지속적 점검

3-1. 법률구조기관, 관련시민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연결
3-2. 진정인 관점의 상담기법 개발 및 활용

4-1. 잠재적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4-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결과의 분석·정리
4-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은행 구축 및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인권정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조체제 구축

추진전략

1. 수사기관 및 군대·공무원·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 각급 교육기관·연수기관 인권교육과정 현황 파악
3.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실시

A.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B. 인권관련 국제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

1-1. 순회 인권교육 추진
1-2.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1-3. 인권교육 강사 은행 구성 및 활용

2-1. 초중고 교과서 내용분석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2. 각급 교육기관의 인권강좌 실태 파악

3-1.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3-2. 인권문화제 개최 및 언론사 공동캠페인 전개

A-1. 인권정책,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수렴 제도화
A-2. 시민·인권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B-1. 인권기구 가입 (APF)
B-2.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가
B-3. 선진국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인권정책

Goal

인권옹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 추진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3. 인권관련 법령 종합조사 단계적 실시
4. 주요 인권현안 적극대응
5.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시
6. 인권침해·차별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침 제정

세부사업

1-1. 국가기관 간 협의체계 제도화
1-2. 금년 중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NAP시안 확정

2-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외국사례 조사
2-2. 관련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1. 국내 인권관련 법령 (형사관계, 사회권, 차별분야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추진
3-2. 유럽인권법원의 형사관련 판례 조사·분석

4-1. 주요 인권이슈(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Task Force Team 구성·운영

5-1. 실태조사 과제선정 기준마련(실태조사 미실시 분야,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 국가단위 장기 조사과제)를 우선 실시
6-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유형분류 및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6-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원인분석과 예방지침(안)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활동 강화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 및 전문성 제고

추진전략

1.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적극적 구제
2. 5대 차별행위 진정사건 조사·시정
3. 채용 상 차별관행 사전 예방

A. 화상 인권상담시스템 구축

B. 지방순회 인권상담 활동전개

세부사업

1-1. 검찰·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적극적 구제
1-2. 구금시설내 열악한 수용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1-3.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제 도출 및 유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1-4.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 연차 실시 추진
1-4. 취약분야(장애인, 부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권조사 적극 실시

2-1. 5대 차별분야(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

3-1. 사후적 시정·구제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채용과정상의 차별행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권조사 추진

A-1.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인터넷 상담 및 화상 진정접수시스템 구축 추진

B-1. 5개 지방도시 순회 인권상담 추진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국제 인권기구와의 교류증진

추진전략

1. 인권교육발전 종합프로젝트 추진
2.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

A. 인권시민단체 활동사업 지원
B.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등 개발

가.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
나. UN 등 국제인권기구·단체주관 국제회의 참가 활성화

세부사업

1-1.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1-2. 영역별 인권교육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 구축
1-3. 인권전문 교수요원 양성

2-1. 인권사진집, 인권애니메이션, 인권포스터, 뉴스레터 등 제작·배포, 인권논문 공모사업, "대 언론 인권 안내서" 발간 추진 등
2-2.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 인권문화제 개최

A-1.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인권시민단체 지원 사업 및 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A-2.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실천 가능한 대중성 있는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왕따" 문제 해결 등)

가-1. APF 회원국가와의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 협력강화
가-2. 남아공, 스칸디나비아 인권기구 및 유럽인권재판소 방문 추진

인권정책

Goal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추진전략

1.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 수행
2.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 친화적 법·제도 실현

세부사업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마련
1-2.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1-3. 북한인권 관련 사업추진(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 탈북자 인권실태조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1-4. 인권상황 실태조사 체계화(NAP 계획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국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등)
1-5. 2003년 3개 TFT(국가보안법/비정규직/사회보호법) 권고안 마련 및 신규 TFT 추진(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1-6. 기타 인권침해·차별행위 판단기준 및 예방지침 수립,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 발간, 인권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 확립 등

2-1. 인권법령정비시스템 구축(주요 개선대상 법령 선별, 개선 추진)
2-2. 법령 개선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2-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사항 모니터링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활동

추진전략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효율적 상담·조사·구제 활동 강화

세부사업

1. 지방사무소 설치 추진(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우선 설치)
2.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장기 미결사건 집중처리, 중간회신 철저 등)
3. 사건처리 내실화(업무 표준화, 인권침해 유형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취약 및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예방활동,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방안 등 검토)
4. 차별관행 조사역량 강화(차별관행에 대한 지속적 조사, 원인·결과 분석 및 조치, 차별행위 주제별 전문가 초빙 교육 등)
5. 면전진정 및 인권상담 지침서 발간 추진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아·태지역 인권선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추진전략

1.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2. 국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3. 국제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세부사업

1-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확정(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6개 권역별 공청회 개최, 5개년 계획 영문판 발행 및 국제 홍보)
1-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초·중·고 인권교육 과정안 개발, 인권교육 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1-3. 인권교육 교재 개발,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영상콘텐츠, 인권 포스터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월간 "인권" 발행 등) 등

2-1.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협력사업 지원,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실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강좌 운영)
2-2.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4개 권역별) 및 업무설명회(연 2회) 개최

3-1.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 개최 준비(9.13~16)
3-2. 국제회의 적극 참가(유엔인권위원회 등)
3-3. 국가인권기구간 교류·협력 강화(APF 활동지원 등)
3-4. 제네바 주재 연락관 설치 추진

인권정책

Goal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추진전략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 사회권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인권현안 적극 대응
3.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대안 마련

세부사업

1-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최재천 의원안 등 5개의 의원입법 개정안 및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개정안)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작성 및 권고

2-1.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인권현안에 대하여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주요 분야에 대한 단계적 권고안 마련, 사회권 관련 전담조직 구성 등)

2-2. 사회권 관련 인권상황실태조사 확대

2-3.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NAP와 연계하여 추진)

2-4. 법령·제도의 정비(국제조약 가입 및 이행 강화를 통한 법·제도의 국제적 수준 향상 도모)

3-1. 군대내 인권개선, 북한인권 연구, 사형제도,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정보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한센인 인권개선 등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Goal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및 시스템 구축

현장 및 지역 인권활동 강화

추진전략

1. 인권취약분야 상담·조사·구제활동 강화
2.

세부사업

1-1. 능동적인 인권현안 발굴·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권조사 활성화(언론매체 모니터링 강화, 차별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지침 제정, 직권조사팀 상설화 등)

1-2. 인권취약시설 인권침해 구제 강화(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군대 등)

1-3.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1-4. 위원회 권고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행 확인 점검

2-1. 현장중심의 조사활동(인용가능 사건의 경우 원칙적 현장조사 실시)

2-2. 인권순회 상담실시

인권교육 및 협력

Goal

적극적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차별시정

추진전략

1.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내실화
2. 선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 및 교류협력 강화
3.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시스템 체계화

세부사업

1-1.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민간경상보조사업,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실시 등)

1-2. 단체활동가 대상 인권교육 강좌 실시(인권단체와 공동 추진)

1-3. 인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부문별 정책간담회,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상시적 협력채널 운영)

1-4. 인권취약현장 방문

2-1. APF, ICC에서의 위원회 위상강화 및 지도적 역할 수행

2-2. UN, NGO 주최 국제회의 참가 다양화

2-3.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원,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사업 등)

2-4.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및 홍보(국제인권법 관심제고 및 이행관련 사업 강화, 국제인권법 관련 세미나 개최 등)

3-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통합학급 교원에 대한 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 추진 및 대상 확대

3-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사이버 인권교육 추진, 인권교육 법제화 방안 등)

3-4. 인권문화 콘텐츠(인권영화, 만화, 사진집, 사이버 문화마당 등) 개발

3-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사례집 발간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가칭) 제안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전 성원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업무전략팀 외부위원)
날짜 : 2005.10.11

- 안녕하십니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외부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입니다. 발전기획단은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발전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인권위로부터 위촉받은 외부위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권위가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등 '자문'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발전기획단에 참여하지 못한 인권단체 및 개인전문가들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인권진영과 인권위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자문'과 '매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외부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부담감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고민을 하던 가운데, 현 발전기획단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2기 인권위의 좌표가 될 발전기획안이 내실있게 마련되고 민간 인권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며, 나아가 이번 발전기획단의 운영 과정이 민간 인권진영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 팀과 전체 발전기획단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발전기획단 추진 일정에 대하여

- 현재 발전기획단은 각 팀별 초안이 나온 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0일까지 발전기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높습니다. 간담회 이전에 민간 인권진영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여유와 계기가 없을 뿐더러, 간담회 당일에는 2~3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간담회 이후에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에 수십 차례 진행되었던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이 민간 인권진영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전체 인권진영의 발전으로

귀결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체 인권진영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2기 인권위가 향후 3년간 주력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물론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 인권위의 전문성과 신뢰구축 등의 문제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할 때,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전체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 민간초청 워크숍을 제안합니다.

- 이에 따라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가안) 개최를 제안합니다. 민간초청 워크숍은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은 물론 발전기획단에 참여하지 않는 인권단체 및 개인전문가도 대거 참여하여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태국 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1박2일간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자신의 업무전략을 기획하는 모범적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1)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

① 인권진영 의사의 실질적인 수렴

-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 2~3시간 가량 진행되는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사수렴 절차에 그치기 쉽습니다.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1박2일 일정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전체를 비워 워크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② 광범위한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은 인권위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인권진영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이 인권단체들로부터 완벽한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상태에서 마련되어야, 이후 실질적인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워크숍 개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③ 논의의 풍부화와 심화

- 현재 추진 일정대로라면 인권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안이 모두 확정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만 발전기획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안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되었는지를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 논의과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④ 팀별 문제의식의 교류

- 현재 발전기획단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업무전략팀, 위상강화팀, 역량강화팀의 논의 과제들은 서로 중첩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팀별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상승 발전시켜야 더 나은 발전기획안

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팀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에서 팀별 문제의식도 교류하고 민간의 의사를 수렴하여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면, 발전기획단에 부여된 임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워크숍 구상

① 개최 시기: 11월초

- 현재 발전기획단은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맞춰 발전기획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일을 굳이 인권의 날에 맞춰 이벤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2월말까지 시기를 늦춰 좀더 충실히 논의를 한 후, 200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12월 10일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민간초청 워크숍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들이나 민간 인권진영에 워크숍 개최를 알리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숍 개최 시기는 11월 초(4~5일 혹은 5~6일)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0월 한달 동안 각 팀은 워크숍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논의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워크숍 이후에는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각 팀에서 초안을 확정하고, 발전기획단 전체 안을 마련한 다음, 인권단체와의 추가 간담회를 거친 이후, 인권위 내부의 의결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워크숍 개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초청 대상 및 실무

▶ 인권위원(특히 상임위원 참여 독려), 인권위 직원, 발전기획단 구성원 등 50명
▶ 민간 인권단체 및 인권전문가(인권강사단, 인권위 정책자문위원 포함) 등 50명

- 100명 규모의 대규모 워크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워크숍 개최 전에 참가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발전기획단은 워크숍 개최 일정을 빨리 확정하고, 민간 인권진영에게 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워크숍은 인권위가 민간 인권진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인권위 재정에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워크숍이 처음 열리는 것이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100명 규모의 행사비용을 모두 인권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최소한의 참가비를 받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나누고 좀더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③ 워크숍의 주요 내용(안)

■ **개요 :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와 팀별 주요 임무**
- 책임 발제 : 발전기획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발전기획단 단장)
- 간략한 질의와 토론

■ **쟁점 워크숍(1) : 2기 인권위 부문별 우선 과제**

-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의 주제별 토론방을 열고, 참가자들 각자가 2기 인권위 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토론방에서는 그 부문이 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부문 내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세부 과제를 뽑아냄.
- 분임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총화하고 전체 논의를 거쳐 우선과제에 관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함.
- 전체 논의를 거친 다음, 간략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우선순위를 참가자 각자가 비중별로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쟁점 워크숍(2) : 2기 인권위 기능별 우선 과제**

- 2기 인권위가 인권전문옹호기구로서 전문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별로 토론방을 열고, 참가자들 각자가 2기 인권위 우선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토론방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구축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적 통제 강화 △회색영역의 인권 의제 발굴과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향상 △국내외 인권진영과의 협력 강화 △찾아가는 인권위(인권위 업무의 현장성 강화) △범국민적 인권의식 고취(인권지침 공표, 인권교육 강화, 홍보 강화) 등 2기 인권위에서 우선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와 그 근거를 논의하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세부과제를 뽑아냄.
- 이때, 개설되는 토론방은 업무전략팀이 총괄하고, 워크숍 당일 참가자들이 제안하는 추가 토론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열어 둠.
- 분임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총화하고 전체 논의를 거쳐 우선과제에 관한 최대한의 합의 도출.
- 마찬가지로 전체 논의를 거친 다음, 간략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우선순위를 참가자 각자가 비중별로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팀별 세션**

- 업무전략팀, 위상강화팀, 역량강화팀 세 개의 토론방을 열고,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토론방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팀에서 미리 준비한 쟁점사항 토론, 쟁점 워크숍 (1)과 (2)에서 제안된 우선과제에 따른 추가 쟁점사항 토론 등을 진행.
  예) 역량강화팀의 경우: 인권위 정책역량 강화 방안 + 우선과제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방안
  위상강화팀의 경우: 인권위 권고 실효성 제고 방안
- 토론이 끝나면, 전체 총화하고 추가 의견이나 이견이 있는지 확인.

■ 국가인권위·민간 인권진영 협력 구축 방안

- 2기 인권위의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위와 민간의 협력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위 내용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 워크숍은 적어도 1박2일간의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박2일간으로 워크숍이 진행되면, 일정 중에 친교의 프로그램을 넣어 좀더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위와 민간 인권진영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부족한 구상입니다만, 발전기획단 내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위상강화기획팀 추진 현황 보고

□ 위상강화기획팀 운영

○ 제2차 팀 전체회의(10/6)

- 참석자 : 외부위원 3명(서경석, 이재명, 임지봉), 실무팀 3명 등 총 7명
- 주요논의사항

1)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환경분석

• 행정부처의 동향과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2)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 수립

• 위상강화 전략적 목표로 ①독립성 강화, ②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 ③정책·교육기능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헌법기구화 추진은 독립성 강화의 하위 전략계획으로 포함하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외부위원 : 환경분석 내용의 세부적인 검토와 추가사항 제안 및 위상강화 전략적 목표에 및 구체적인 전략내용을 각자 정리하여 실무팀에 보내기로 함. (다음주 월요일까지)

• 실무팀 :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내용 정리
전략수립을 위한 자료정리 및 분석

○ 실무팀 회의(1회)

- 위상강화를 위한 환경요인 분석
- 팀회의 진행방향 논의

□ 다음 주 계획

○ 제3차 팀 전체회의 개최

- 일시 : 10. 12.(수) 오전 9:00
- 장소 : 위원회 12층 회의실

<참고자료 1>

위원회 위상 관련 환경분석

□ 외부환경 분석(internal environment analysis)

외부환경	추세	위원회에의 영향	분석	대응
정부	법무부의 인권주무부처 자처	- 인권 업무의 중복, 혼선, 충돌 발생 가능 - 사법부가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선택(제도·정책 권고, 차별시정 업무)·집중할 수 있는 여지 확보	위협 기회	
	위원회 권리구제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성 논란	- 권리구제에 있어 사법부와의 변별성 요구	위협	
	행정부처의 간섭(예: 행자부)	- 인사 및 규칙제정권의 미확정 - 운영상의 독립권 확보 어려움	위협	
	행정부 내 인권 부서 신설 관련 옴부즈만 및 유사기관의 증가	- 위원회 업무의 변별성 획득 약화 -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축소 가능 - 옴부즈만 기구 및 유사 기관의 통폐합 문제 제기 가능 - 국민들의 권리구제 창구의 다양화 - 행정부내 인권부서와의 역할 관계 정립 필요(모니터링 강화)	위협 기회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업무 일원화 추진	- 위원회의 업무 영역 및 양적 증가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 요구 증가(예: 성희롱, 성차별 관련 사건)	기회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향상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감소	기회	
국회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인식 (행정부처의 하나로 인식)	-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노력에 장애 가중	위협	

외부환경	추세	위원회에의 영향	분석	대응
정치	개헌 움직임			
	- 통치구조의 변화 => 국가기구 효율성	- 유사 권리구제기구의 통폐합 요구 강화	위기	
	- 기본권 구조 확립	-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부처로 이관될 가능성 제고 - 위원회의 기본권 관련 업무 강화	위기 기회	
정치	정권교체기와 국가기본정책 변화 가능성	○ 위원회 업무 방향에의 변화 가능성 - 업무 주력방향 재조정 필요 - 기본권 보장 기능 약화 - 정치적 이슈 부상(예: 북한인권)	위기 기회	
		○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및 기능에 대한 도전	위기	
		○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	위기	- 위원, 위원장 임기 조정 + 인사청문회
대북관계	6자 회담 타결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개입 필요성 전면 대두 - 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 접근 범위 확대 (관계정상화->휴전체제의 변화->헌법구조의 변화) - 북한 인권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수집 필요 -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기회	피권고기관 검토 권고 내용 국제인권규범의 흐름 동북아 한반도 정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국	- 주변국들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마련 (예: 주한 외국대사관 및 국제기구, 외국주재 정부 기관 등)		
인구구조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령화 가속 - 출산율 저하 - 외국노동력 유입 확대 - 국내력 유출 증가	○ 새로운 인권 사안 증가 - 노인 인권문제 증가 - 이주노동자, 인종,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문제 증가 - 재외 한국인의 인권문제 ○ 제도·정책 관련 업무 증가 ○ 다차원적인 파트너십 형성 불가결	기회	

		-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정부 부처 - 관련 NGO/ 산업계(고용자, 노동자 그룹 포함) / 국제기관 ○ 이주노동자관련 국제 법, 규범, 조약, guideline에 대한 전문성 요구 증가		
경제	○ 부의 양극화, 계층 분화 - 사회갈등 확대	- 기존 위원회 갈등해결 방법의 한계 -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위원회의 역할 요구 증대	위협 기회	
	- 빈곤문제 심화	- 빈곤층에 대한 인권정책 마련 -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증가	기회	
과학, 기술	○ 기술발전 심화 및 신기술의 등장	○ 신기술 등장에 따르는 인권문제 예측, 대책 마련 요구	기회	
	- ICT 발전의 가속화	○ 정보인권문제 급증 - 개인정보 침해 구제 사안 폭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제도 요구 증가 - 정보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digital divide)문제 심화 ○ 정보 인권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축적 필요	기회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요구	위협 기회	
세계적 동향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기조의 심화			
	- 외국노동력의 유입	-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의 전면화 가능성	기회	
	-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유연성 확대로 인한 노동운동의 지형 변화	- 노동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paradigm 개발 필요	기회	
	- 경쟁중심의 사회문화 심화	- 인권친화적 문화 정착 어려움	위협, 기회	
	- 지역 블록화 확대	- 지역(region)내 국가들간의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 대두		
국민의식	-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무관심	- 위원회 아젠다 중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여론 조성 필요	위기, 기회	
	- 인권의식 향상	- 권리구제 요구 증가, 업무 폭주 - 위원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 강화	위기, 기회	

외부환경	추세	위원회에의 영향	분석	비고
NGO	위원회에 대한 인권단체의 편향된 인식 (인권운동의 첨병, 실효성없는 기관, 무소불휘 기관, 옥상옥)	- 위원회에 대한 인권NGO들의 반감 고조 -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인권위의 입지 축소 - advocacy 활동 강화 요구	위협 기회	
	인권단체 외 NGO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예: 청소년단체 등)	- 폭넓은 NGO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가능 - 다양한 사회분야에 있어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요구 증가	기회	
	장차법,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 위원회의 이행강제력 확보 요구 -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간의 갈등 야기 가능성	위협	
	위원회에 대한 당파적 인식 확산	- 사회 조정능력에 저해 - 위원회의 입지 축소 - 파트너십 약화	위협 기회	- 공익/인권 - agenda priority 설정 - advocacy
	차별사안의 증대	- 위원회 업무비중 재검토 필요 (Ex: 차별 vs. 침해, 개별권리구제 vs. 제도·정책 권고) - 기존 권리구제방식의 실효성 약화 - 침해사건에 대한 새로운 approach 요구 - 대다수의 침해사건은 정부기관으로 이관 필요	기회	- 무소속 침해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 갈등해소 Prog. 개발(조정, ADR, IR, 사회협약 등)
	개헌운동	위원회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 촉발	기회, 위협	- 기본권 강화를 위한 Master plan 수립 - 업무영역의 개선, 조정, 확대 (교육, 생명, 환경, 노동 등)
	Governance에 대한 요구	- 위원회 조직운영 및 활동에 대한 공개 및 투명성 제고 필요	기회	- Good governance 모델 개발
	언론과의 긴장관계	- 언제든 대립, 갈등 관계 발생 가능	기회, 위협	국제적 위상 강화
	NI 및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의 협력 강화	- 위원회 업무내용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표준 요구 증대 - 위원회 인권 아젠다의 세계화 요구 (예: 국내이주노동자 등)	기회	

위기요인 · 기회요인 분석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정부> ○ 법무부의 인권주무부처 자처 ○ 위원회 권리구제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성 논란 ○ 행정부처의 간섭 ○ 행정부내 인권부서 신설 ○ 관련 옴부즈만 및 유사기관의 증가 ○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잘못된 인식(행정부처의 하나로 인식) **<정치, 사회, 경제 동향>** ○ 개헌 정국 - 통치구조 변화 가능성 ○ 정권교체기와 국가기본정책 변화 가능성 ○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 ○ 부의 양극화, 계층 분화 심화 - 사회적 갈등 심화 ○ 기술발전 심화 및 신기술 등장 - 생명과학 기술의 등장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기조의 심화 - 경쟁중심의 사회문화 심화 ○ 국민의식의 변화 -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 **<NGO 부문>** ○ 위원회에 대한 편향된 인식 ○ 장차법,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 가버넌스에 대한 요구 **<국제 부문>** ○ NI 및 국제 인권기구들의 협력 강화	**<정부>** ○ 법무부의 인권주무부처 자처 ○ 행정부내 인권부서 신설 ○ 관련 옴부즈만 및 유사기관의 증가 ○ 정부의 차별시정 업무 일원화 추진 ○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향상 **<정치, 사회, 경제 동향>** ○ 개헌 정국 - 기본권 구조 확립 ○ 정권교체기와 국가기본정책 변화 가능성 ○ 6자 회담 타결 ○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령화 가속, 출산율 저하 - 외국노동력 유입 확대 - 국내 인력 유출 증가 ○ 부의 양극화, 계층 분화 심화 - 사회적 갈등 심화 - 노동운동의 지형 변화 ○ 기술발전 심화 및 신기술 등장 - ICT 발전의 가속화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기조의 심화 - 이주노동자문제 전면화 - 노동인권관련 패러다임 개발 - 지역내 국가간 인권증진 협력 필요성 대두 ○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 차별사안의 증가 **<NGO 부문>** ○ 인권단체 외 NGO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 가버넌스에 대한 요구 **<국제 부문>** ○ NI 및 국제 인권기구들의 협력 강화

<참고자료 2>

제1차 위상강화팀 회의

□ 위원회 위상 강화

○ 위원회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 필요
○ 꾸준한 활동과 성과를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획득이 급선무 (→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위상강화)
○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임무와 위상, 역할, 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타 권리구제기관과의 역할 중복, 변별성 문제

○ 역할과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조직의 특성을 잘 살려 창의적인 역할 모색
○ 인권 아젠다 및 우선순위 설정 필요
○ 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발굴 및 개발
- 국가적 영역에서 다른 분쟁해결기관들이 다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
- 국가기관들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원, 복잡한 절차로부터의 자유로운 분쟁해결
- 사법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안
-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권리구제방식의 변별성 추구 필요(win-win식의 갈등해결)

□ 위원회의 독립성 및 헌법기구화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성 논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행정부의 자극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적 차원에서 위원회의 헌법기구화 추진이 바람직한 대안임. 단, 헌법기구화 추진과 동시에 바람직한 헌법기구로서의 위상정립 필요.
○ 위원회의 현재 지위(무소속 국가기관)에 대한 정체성 및 장단점에 대한 평가 필요

□ 권고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 시정명령, 처분성, 준사법적 성격 확보보다는 권고적 효력을 강화 방안 마련이 더 바람직함
○ 권한 활용을 극대화하여 권고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 실효성 확보 문제(처분 실효성)와 더불어 조사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차별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진술권 확보 필요
○ 공소시효 및 조사 대상 시효의 확대 필요

□ 외부 동향

○ 개헌논의

-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통치구조)의 문제와 기본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시작(NGO)
- 개헌논의가 대통령 임기 등 제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큼
- 개헌정국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헌법기관화의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여론 조성 필요

○ 정부부처내의 인권보호기구 등장

- 부처간 대립적 구도의 산물인 일시적 현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 유사기구들의 등장에 따른 위원회의 과제 및 업무 재정립 필요

<참고자료 3>

위원회 위상에 대한 내부 의견

(source: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보고서)

○ 위원회의 위상은 초기 설계단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국민들이 더 알아주는 기구가 되었다.
○ 어느 정도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 최근에 평가가 좋아진 듯하다.
○ 파리원칙에 충실한 조직임
○ 발족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이룬 것이 너무 적다
○ 오히려 무소속이 나쁠 수 있음. 헌법기구화되지 않는 한 독립성 확보는 어렵다.
○ 5~7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헌법기구화하는 방법만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임
○ 위원회의 권력은 법이나 정권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한 헌법기구화하는 것도 바람직함.(5년후)
○ 민간기업의 경우 인권위의 조사나 권고를 또 하나의 규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인권단체와의 협력 미진
○ 권한 강화 등에 집중할 경우,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기구화될 것임
○ 찾아가는 위원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위원회
○ 전략적 집중(focusing) 필요
○ 위원회의 기획, 통합, 조정 기능 필요
○ 사회적 의제 선점해야 한다.
○ 한국의 인권상황에 걸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
○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 사회권에의 집중 필요
○ 제도개선 업무 등에 집중 필요
○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함
○ 법원의 판례가 위원회 권고안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사고 필요
○ 법률과 다른 인권적 가치를 지녀야함. (인권의 잣대)
○ 위원회 탄생의 배경, 미션 등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 필요

○ 구성원 각자의 의식 변화 필요
○ 동기부여 시스템 필요
○ 조직 비전 공유 부족
○ 위원회 지도부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중장기 비전을 갖는 게 어렵다
○ 국민에게 가장 친화적인 조직
○ 장단기 발전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이 없다
○ 핵심인재 발굴 및 육성 절실
○ 인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
○ 국민 대상으로 존중, 차별예방 등에 대한 인권의식 확산
○ 현재는 위원회의 기능이 조사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외의 기능 강화 필요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점차 축소되어질 전망이므로, 기존의 조사 또는 권고를 통한 해결방법 외에 복합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 필요
○ 사명의식과 자기희생
○ 중재자로서의 역할 담당
○ 헌법기구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분야별 협력,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역량강화팀 업무 추진 현황보고

(2005. 10. 07. 현재)

□ 주요 활동 사항 □

1. 2차 팀 전체회의 (9.25. 목)

○참석자 : 팀전원(8명)

외부위원: 오창익, 이대훈, 정경수, 최희윤, 한상희

내부팀원: 나영희 팀장, 심민석자료실장, 박숙미 간사

○주요 논의사항 :

■보고안건 - 1)위원회 교육현황 조사 결과 보고

2)직무기술서 설명

3)교육훈련 조사결과 보고 - 과장급 의견조사

4)위원회 발간 자료물 목록

5)위원회 인트라넷 메뉴의 구조와 항목 설명

■논의안건 - 1)외부위원 의견서(오창익, 최희윤, 정경수)를 중심으로 역량강화방안 논의

2)직무범주별/직급별 전문역량 및 능력개발 항목의 적합성 ➡ 재논의

3)직무범주별/직급별 분류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안 ➡ 재논의

4)상시 토론체제 구축(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재논의

2. 내부 팀회의 1회

○직원 대상 교육수요 의견 조회 및 결과 정리

○2차회의 논의 반영 → 직무범주별/ 직급별 직무전문역량 및 능력개발 항목의 수정

○3차회의 의제확정 및 역할분담 논의

3. 현재 진행업무

○직원대상 교육수요 의견 조회 결과 보고(집단별 인터뷰 1차 완료)

- 완료(1차) ; 교육협력(2회), 정책(3), 침해조사(1), 차별조사(1), 센터, 행정지원(특별 의견 없음)
- 향후(2차) ; 기능직, 전문분야(홍보, 자료, 정보, 감사)

○2차 직원의견조회 계획 수립

○직무범주별/직급별 전문역량 및 능력개발 항목 재조정 작업

□ 향후 활동 계획 □

1. 3차 팀 전체회의 (10.13. 목 개최예정)

○논의안건 : 1)직무범주별 전문역량과 역량개발항목, 교육목표, 교육 프로그램 논의 (위원별)

2)상시적 토론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검토 (공통)

3)직원대상 교육훈련 조사결과물에 대한 의견 검토 (공통)

4)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 위원별 3차회의 역할 분담 (잠정)

1)정경수 - 종합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과 KMS의 유기적 구축방안 제안

2)이대훈 - 정책, 교육분야에서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KMS의 유기적 구축 방안

3)한상희/오창익 - 조사분야의 구체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과 KMS의 유기적 구축방안

4)최희윤 - KMS와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의견서

2. 주요 업무 추진 일정

○ 10월 둘째주 ; - 10월 13일 3차 회의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 기초안 및 KMS 기초안 도출

- 교육 프로그램 기초조사 및 기초안 작성 / KMS구조 기초안 작성

○전체 활동 일정

활동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팀 구성	→																
직원 need 조사						→											
교육훈련 체계 구조화(1차)							→										
교육훈련 체계 구조화(2차) 위원회 시스템의 구조 및 KM현황 파악								→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1차)							→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2차) KMS 활성화 전략 수립								→									
초안 작성								→									
수정 보완(팀간 검토 포함)									→								
총장보고										→	11.4.						
최종보고서 제출											→	11.10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제3차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 1차 수정안의 구조

- 1차 수정안은 크게 △인권정책 △조사·구제 △인권교육 이상 세 분야로 나뉘며, 각각의 분야는 ▲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으로 구성됨. 애초 최초안은 △인권정책 △인권침해 조사·구제 △차별시정 △인권교육 이상 네 분야로 나뉘었음
- 최초안과 1차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인권정책 분야와 인권교육 분야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음. 다만 인권침해 조사·구제 분야와 차별시정 분야를 조사·구제 분야로 통합하고, 세부목표의 추상수위를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서술 체계가 바뀌었을 뿐, 내용의 발전이 크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세부목표의 선정이유가 최초안에는 기술되어 있었으나, 1차 수정안에는 제외됐음.

□ 의견 1: 업무전략안의 구조 자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1차 수정안은 업무전략안의 전체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분야별 추진전략을 곧바로 기술하고 있음.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세 개 분야에다 2기 인권위의 비전과 사명만 덧붙이는 식으로 전체 업무전략안이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업무전략안의 구조를 열어두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현 구조의 한계>

- 1차 수정안의 구조만 놓고 본다면, △인권정책국 △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이라는 인권위의 현 업무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책개선 권고와 개별구제 권고를 엄격히 구분하는 체계로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위 조직개편안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안적 구조>

- 동일한 표현과 문장도 제기되는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됨. 따라서 업무전략안의 구조 자체에 대한 합의가 대강이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본인은 업무전략안의 전체 구조를 《△업무전략 배경과 목적 △업무전략 구성 과정 △현 인권상황 개괄 △2기 인권위의 비전 △사명 △업무목표와 핵심영역 △세부추진전략 △총괄책임부서》로 제안함.

- 우선 '업무전략 배경과 목적'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업무전략

안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음(몽골, 아일랜드의 사례 참조). '업무전략 구성 과정'은 업무전략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임(태국의 사례 참조). '현 인권상황 개괄'은 이후 비전, 사명, 전략 등을 합의하는 공동의 인식기반을 제공할 것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서술되어야 할 것임(태국의 사례 참조). '비전'과 '사명'은 기존 인권위 내부 공모작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약간 수정하는 식이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이는 비전과 사명을 정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최소화하는 대신, 업무목표와 핵심영역을 설정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업무전략안을 충실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노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향후 정해지는 업무목표와 핵심영역을 고려하여 귀납적으로 비전과 사명을 추론해내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업무전략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와 핵심영역', 그리고 '세부목표, 추진전략, 총괄책임부서'가 되어야 할 것임. '업무목표'는 기존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점검될 수 있을 것이며, '핵심영역'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광범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태국, 아일랜드의 사례 참조). '세부목표, 추진전략'은 업무목표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특히 핵심영역에 대한 추진전략은 별도의 범주로 기술되어야 할 것임(아일랜드의 사례 참조). 또한 추진전략의 책임단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총괄책임부서'를 업무전략안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 1차 수정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1차 수정안은 업무목표와 핵심영역에 대한 고려 없이 현 조직체계에 맞춰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 업무전략안의 논의는 현 인권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공유 속에서 업무목표를 점검하고 핵심영역을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그리고 업무목표에 따라 1차 수정안의 추진전략들은 전면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핵심영역에 대한 별도의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의견 2: 업무전략안과 별도로 추진전략 해설집을 만들 것을 제안함

- 업무전략안의 추진전략은 최대한 구체화되어야 함.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설정된 추진전략은 현실에서 업무지침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공산이 큼. 하지만 추진전략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고 할지라도, 전략 자체가 갖는 추상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개별 추진전략이 현실에서 실효성있는 업무지침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전략안과 별도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추진전략 해설집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다만 업무전략팀 회의는 추진전략 해설집을 내는 것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각각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인권정책 분야의 추진전략 1.1. '사회권 연구 역량의 강화'의 경우, 업무전략팀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권 연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권 연구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회권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관 부서는 어디이며 어떤 부서가 총괄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개별 추진전략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그 결과를 모으는 식으로 추진전략 해설집은 만들어질 수 있음.

- 추진전략 해설집을 만들게 되면 업무전략안이 그저 아름다운 구상으로 문서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업무전략안에 대해 민간 인권진영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의견 3: 1차 수정안의 세부목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앞서 밝혔듯이 논의의 순서는 먼저 '현 인권상황 개괄'에 대한 공유 속에서 2기 인권위의 '핵심 과제와 업무영역'을 정하는 것이 먼저임. 그러한 이후 세부목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온 세부목표는 1차 수정안에 제시된 세부목표와는 전혀 다를 수 있음. 그렇다면 굳이 지금 1차 수정안의 세부목표를 점검할 필요는 없겠으나,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왜냐하면 1차 수정안 세부목표의 내용이 핵심과제별로 체계만 바뀐 채 그대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임.

<2기 인권위만의 특정한 목표 설정 필요>

- 먼저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들은 모두 2기 인권위의 '특수한' 목표라고 볼 수 없고, 언제나 유념해야 할 '일반적인' 업무분야로 보임. 따라서 2기 인권위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세부목표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인권정책 분야의 세부목표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반 형성'이라는 표현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임. 조사·구제 분야의 세부목표 3. '사건처리 체계 정비'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식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과도한 목표 설정 변경 필요>

- 1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세부목표들 중 2기 인권위에서 추진하기에는 과도한 목표들도 포함되어 있음. 인권교육 분야의 세부목표 1. '인권교육 법제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이 대표적인 예임. 지금은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성급히 시도하기보다는 법제화로 가는 기반을 형성해야 할 시기임. 인권교육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주제별, 대상별 인권교육의 전형을 개발하며 인권교육 강사 풀을 확충하는 등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추진 동력과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세부목표 1은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기반 형성과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분야의 세부목표 3. '모든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의무화'의 경우에도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고 판단됨. 공무원 인권교육의 경우, 공무의 성격별로 각기 다른 접근 원칙, 내용, 교육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도 형성되어 있지 못할 뿐더라 대상별 인권교육의 전형이 세분화되지도 못한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목표로 설정하기 전에 '공무원 대상별 인권교육의 전형 창출' 정도로 세부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세부목표와 추진전략의 조화 필요>

- 세부목표와 추진전략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도 발견됨. 인권교육 세부목표 4. '시민·지역사회 인권 역량 강화 지원'의 추진전략을 보면, △인권교육 우선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 △인권 시민·지역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지원 △인권옹호를 위한 컨텐츠 개발·제공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임.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기존 공보관실과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를 '시민사회 인권역량 강화 지원'이란 범주로 무리하게 묶었다고 보여짐. 그러기에 인권정책 분야의 추진전략 3.3.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계의 정비 및 강화'와 내용상 별반 다르지 않은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인권교육 분야의 추진전략 4.5.로 중복 제시되고 있음

- 위에서 거론한 사례는 그 사례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몇몇 예로써 설명한 것임. 따라서 이후 업무전략안을 수정할 때는 세부목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업무전략팀 회의에서는 추진전략을 분야별로 총괄·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안을 만듦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막고, 추진전략별로 책임단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의견 4: 우선적인 논의과제, 업무목표에 관한 제안

- 3차 회의에서 본인이 제안한 업무전략안의 구조와 논의순서를 합의하는 것도 큰 성과이겠으나, 촉박한 논의 일정을 고려해 본다면 업무목표에 대한 기초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래야 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의 기초논의를 토대로 업무목표를 합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목표와 추진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논리적으로 업무목표는 현 인권상황에 대한 나름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 이를 역으로 말하면, 업무목표는 현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을 일부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목표가 합의된다면 그 업무목표가 도출된 인권상황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모두가 개별적으로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목표를 일단 나열하고,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후, 이를 중심으로 인권상황을 사후에 개괄하고, 이렇게 작성된 '현 인권상황 개괄'을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논의 수순이라 생각됨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인은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본인의 제안이 2기 인권위 업무목표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함. 본인은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를 모두 제안할 역량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인권위 관계자 및 외부위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러

고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업무목표가 확정되기를 바람.

- 먼저 2기 인권위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3대 목표, 즉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인권교육 및 예방기능 강화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의 핵심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다만 이 3대 목표 자체도 굉장히 일반적인 진술이라 할 수 있어 표현이 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인권위 전체·부문별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전형 창출'이라는 식으로 명확히 표현될 필요가 있겠음.

- 여기에 덧붙여 본인은 '인권위의 투명성·국민 접근도 제고를 통한 신뢰 구축'이 2기 인권위의 업무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봄. 지난 1기 인권위의 폐쇄적 운영은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 2기 인권위도 과거의 폐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홈페이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접근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음. 인권위 결정문이 빠짐없이 게재되는 것도 아니고, 인권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음. 다른 국가기관이 만드는 뉴스레터조차 인권위는 만들지 못하고 있음.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인권위로 거듭날 때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권위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위의 투명성·국민 접근도 제고란 목표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2기 인권위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음. <끝>